

# 안산시 여성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9-985 |
|----------|-------|

제출년월일 : 2026. 3. 10.  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## 1. 제안이유

- 안산시 여성안전 지역연대의 용어 정비대상 및 존속기한이 2026. 6. 30. 종료됨에 따른 해당조문 일부개정

## 2. 주요내용

- 가.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따른 용어 정비(안 제7조제4항)
- 나. 지역연대 존속기한 연장(안 제7조제6항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일부개정조례안 : 【붙임 1】
- 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【붙임 2】
- 다. 관계법령발췌서 : 【붙임 3】
- 라.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- 마. 예산수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※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: 【붙임 4】

- 바. 입법예고결과 : 의견없음

○ 입법예고 : 2026. 1. 14. ~ 2026. 2. 3. (20일간)

### 사. 기타 참고사항

- 1) 현행조례 : 【붙임 5】
- 2) 방침결정문 : 【붙임 6】

【붙임 1】

안산시 여성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여성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4항 중 “1회에 한하여”를 “한 차례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2026년 6월 30일”을 “2031년 6월 30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| 소관 실·국 |                | 복 지 국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입      | 여성보육과장         | 두 현 지               |
| 안      | 여성안전팀장         | 김 연 경               |
| 자      | 담 당 자<br>(연락처) | 유 오 금<br>(481-3420) |

【붙임 2】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행  | 개정안  |
|---|--|
| <p>제7조(지역연대의 구성) ① ~ ③<br/>(생략)</p> <p>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<u>1회에 한하여</u>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</p> <p>⑤ (생략)</p> <p>⑥ 지역연대의 존속기한은 <u>2026년 6월 30일까지</u>로 한다.</p> | <p>제7조(지역연대의 구성) ① ~ ③<br/>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<br/>---<u>한 차례만</u>-----<br/>-----<br/>-----.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-----<u>2031년 6월 30일</u>-----.</p> |